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2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금액 상향(정일영의원안)	3

I. 개요

1.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92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일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19.

(3) 회 부 일 : 2024. 8.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와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애인에 대하여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추가 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추가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1조(추가공제)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금액 상향(정일영의원안)

현행	개정안
☐ 추가공제(제51조) ○ 기본공제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금액을 기본공제금액(150만원)에 더해 추가 공제 - 70세 이상(경로우대자): <u>연 100만원</u> - 장애인 : <u>연 200만원</u> - 부녀자* 공제 : <u>연 50만원</u>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한부모공제 : <u>연 100만원</u>	☐ 추가공제 금액 상향조정 ○ 기본공제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금액을 기본공제금액(150만원)에 더해 추가 공제 - 70세 이상(경로우대자): <u>연 200만원</u> - 장애인 : <u>연 400만원</u> - 부녀자 공제 : <u>연 100만원</u> - 한부모공제 : <u>연 200만원</u>

* 정일영의원안 2024. 8. 19. 제출(의안번호 2920)

☐ 개정안은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금액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하려는 것으로, 경로우대자공제 및 한부모공제 금액을 현행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공제 금액을 연 2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부녀자공제 금액을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하려는 것임.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 제도는 납세의무자 본인 및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둬으로써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임.

인적공제 중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인정되는 기본공제는 소득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포함)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공제액을 의미함.

인적공제 중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인정되는 추가공제는 소득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공제를 의미하며, 현행법상 추가공제는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경로우대자공제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한부모공제 연 100만원 등이 인정되고 있음.

먼저 경로우대자공제는 1988년 세법개정을 통해 198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에는 65세 이상인 경로우대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3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였고, 이후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현행과 같이 경로우대자의 연령요건을 70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제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하였음.

장애인공제는 1981년 세법개정을 통해 1982년 ‘장애자공제’라는 명칭으로 도입된 제도로, 최초 도입 시에는 부양가족 중 공제대상장애자가 있는 경우 인당 연 3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고, 이후 공제액을 점차 확대하여 2004년 세법개정을 마지막으로 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200만원으로 규정하였음.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의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

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대하여 연 50만원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1994년 「소득세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래 공제액이 연 50만원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한부모공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에게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제액이 연 100만원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추가공제 제도의 공제금액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추가공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노인이나 장애인을 부양함으로써 추가지출이 수반되는 가구나 일반 가구에 비해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낮고 양육부담이 큰 한부모가정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추가공제 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416만원에서 2022년 523만원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연간 204만원으로 나타나, 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에는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고령자(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

(단위: 천 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인당 진료비	4,162	4,487	4,796	4,759	4,974	5,229

자료: 통계청, 「2024년 고령자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월평균)]

(단위: 천 원)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월평균 총 추가비용	164.2 (연간 197만원)	165.1 (연간 198만원)	152.6 (연간 183만원)	170.0 (연간 204만원)
교통비	25.6	20.5	25.7	24.1
의료비	66.0	65.9	58.5	57.8
보육·교육비	4.1	8.0	7.5	10.4
보호·간병비	13.6	20.6	21.9	28.2
재활기관 이용료	4.2	4.8	2.6	4.8
통신비	9.9	9.8	11.8	0.2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유지비	18.9	7.2	15.3	8.8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16.8	22.9	5.5	18.5
장애 관련 식비	-	-	-	10.7
기타	5.1	5.4	3.8	6.4

주: 2023년 - 장애 관련 식비를 별도 항목으로 조사(2020년까지 '기타'에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또한,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모자가구(+기타)¹⁾는 부자가구(+기타)에 비해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정²⁾에 대한 공제금액을 확대하

1)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

2) 모자가구와 부자가구를 모두 포함함.

는 개정안은 모자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부모가구유형별 근로·사업 소득]

(단위: %)

구 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평균(만원)
모자	12.5	46.3	29.2	12.0	188.2
모자+기타	3.4	40.4	35.8	20.5	221.8
부자	3.9	18.6	40.6	36.9	264.5
부자+기타	2.9	16.5	33.6	47.0	296.3

자료: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5.23. ³⁾

둘째,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조세부담 증가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물가수준은 매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 따른 공제금액은 각각 1994년(부녀자공제), 2004년(장애인공제), 2008년(경로우대자공제), 2012년(한부모공제)에 설정되어 최소 12년에서 최대 30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공제혜택은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1994년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	49.77	63.15	72.42	81.66	91.81	95.78	100.00	111.59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3)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발표하고 있으며, 2024년 조사결과는 2025년도에 발표 예정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경로우대자공제 금액 확대에 대하여는 기초연금의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14년 7월부터 도입·운영 중인 기초연금제도는 당초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소득분위별 단계적 인상을 통해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자는 월 최대 334,810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둘째, 장애인공제 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의료·취업·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⁵⁾”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셋째, 부녀자공제 확대와 관련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배우자가 없는 남성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은 편부가정인 경우 편모가정과 동일하게

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고,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총 2조 5,3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5)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총 358억 6,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100만원(개정안에 따르면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없고 직계존속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남성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저소득 남성인 경우에는 추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여 같은 조건의 여성에 비해 공제혜택이 적은 상황으로 부녀자공제액을 상향하면 같은 조건에 처해있는 남성과의 과세 불형평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넷째, 한부모가정 추가공제 제도는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소득기준을 고려하는 재정사업이 한정된 재정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음.

즉,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⁶⁾”과 같이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여성가족부의 재정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6)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분 5,527억 9천만원을 비롯한 총 5,528억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